

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,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구성, 회의,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)
- 수익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의2)
-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의2)
-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, 제4조의3, 제8조, 제16조, 제19조, 제21조~제22조의2, 제24조~제6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·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 등 특정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함으로써, 행정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.
- 다만, 수의계약 허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로 인한 불투명한 계약체결 또는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, 집행기관은 관련 내부 지침 마련과 계약 사전·사후 단계별 관리 기준 정비, 감사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. 아울러,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 준수 및 부작용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공유재산의 적극적·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대장 등재 누락, 무단점유, 사용 목적 외 활용 등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밀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 이를 통해, 공유재산 대장 등재 누락·무단점유·변동사항 미반영·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 중인 재산 등을 바로잡아 현실과 동떨어진 공유재산 관리가 아닌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-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촉직의 비율을 늘리고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, 집행기관에서는 개정 후 위원회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